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Perception and Need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Industries which have less than 5 Employees

윤순녕¹⁾ · 정혜선²⁾ · 이복임³⁾ · 이현주⁴⁾ · 이현정⁵⁾ · 김화중⁶⁾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노동부, 1999).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처음 제정 당시에는 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50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후 업종과 규모면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5인 이상 되는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였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산재보험의 적용이 확대되면 각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는 사업장에서 작업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어도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고, 사업주에게는 산재로 인한 보상비용을 산재보험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경영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서 산재 발생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산재보험 적용확대 초기에는 산재율이 높아질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산재 발생율의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시에 보험가입 대상자와 사업체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행정적인 업무량의 폭증으로 산재보험의 효율적인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노동연구원, 1999). 통계청의 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12월 말 현재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수는 약 250만개이며(전체 사업체의 86%),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약 440만명(전체 근로자의 30%)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 200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규모를 파악해 보면 사업체의 수는 88만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16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산재보험에 적용됐던 대상 사업장에 비해서는 370%, 적용 근로자에 비해서는 22%가 증가되는 수치이다(윤조덕, 2000에서 재인용).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사
3)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4) 용인송달대학 겸임교수
5)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6)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처럼 많은 사업장이 동시에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됨으로써 행정적인 업무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요구 및 산재보험의 올바른 추진방향 등 본질적인 문제는 소홀히 취급되기가 쉽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자신이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면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지난 1999년 12월에 85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산업간호협회(2000a)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응답자의 48.1%에 이르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에 발맞추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산재보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산재보험이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까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산재보험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노동행정에 반영한다면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근본 취지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도 및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산재보험 확대 적용 시행 후 효율적인 산재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처리 실태를 파악한다.
- 둘째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다.
- 셋째 산재경험 여부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다.
- 넷째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다.
- 다섯째 산재경험 여부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다.

3. 연구의 개념틀

본 연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도 및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개념틀은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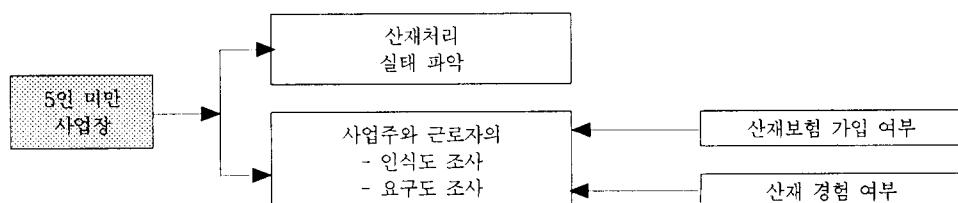
4.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한 5인 미만 사업장 중 200개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개 사업장에서 1명의 사업주와 1명의 근로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응답을 기피하거나 거절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사업주는 모두 181명이었으며, 근로자는 105명이었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간호사 5명을 조사원으로 사용하였다. 조사원인 간호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면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었다.



<그림> 연구의 개념틀

조사원에 따른 조사결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고자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론개요와 조사방법에 대해 2회의 사전교육을 시행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3)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산재보험에 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사업주용과 근로자용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설문지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 가입여부, 산재발생여부,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도, 산재보험에 대한 요구도 등에 관한 것이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실태 파악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식도 및 요구도에 대한 분석은 t-test를 시행하였다.

5. 연구결과

1) 대상 사업장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 대상 사업장 중 제조업이 78.9%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설립년도로는 1990년~2000년 사이인 경우가 68.0%로 나타나, 설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제일 많았다. 공장소유형태는 93.0%가 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인 경우가 44.1%로 제일 많았으며, 산재보험가입은 4.4%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 산재 경험 및 산재처리 실태

근무 중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했던 경우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사업주의 18.2%에서 직원 중 재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 대상 근로자의 60.0%에서 작업 중 본

〈표 1〉 대상사업장의 일반적인 특성

	구 분	N	%
업 종	제조업	127	78.9
	도소매업	24	14.9
	서비스업	9	5.6
	기타	1	0.6
소계		161	100.0
설립 연도	1980년 이전	5	2.9
	1980년~1990년 이전	45	25.7
	1990년~2000년 이전	119	68.0
	2000년 이후	6	3.4
소계		175	100.0
공장소유형태	임대	146	93.0
	자가	10	6.4
	기타	1	0.6
	소계	157	100.0
상시근로자 수	1명	71	44.1
	2명	53	32.9
	3명	29	18.0
	4명	8	5.0
소계		161	100.0
산재보험가입여부	가입	7	4.4
	미가입	152	95.6
	소계	159	100.0

* 무응답 제외

인이 재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2 참조).

재해가 발생했던 경우 중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4일 이상의 재해는 사업주의 응답에서는 9.9%, 근로자의 응답에서는 33.3%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산재 치료비의 처리방법을 보면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회사가 처리했다는 응답이 사업주는 60.5%, 근로자는 42.9%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처리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데도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이 사업주 응답의 5.6%, 근로자 응답의 20.0%에 불과하였다. 현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표 2〉 근무 중 사고발생 현황

	직원 중 재해 발생했던 경우 (사업주)	N(%) ^{a)}	본인이 작업 중 재해 당했던 경우 (근로자)	N(%) ^{a)}
치료기간이 3일 이하	15 (8.3)		28 (26.7)	
치료기간이 4일 이상	18 (9.9)		35 (33.3)	
계	33 (18.2)		63 (60.0)	
대상자 수	181 (100.0)		105 (100.0)	

주) 백분율(%)은 대상자 수에 대한 비율임.

직원이 업무 중에 다칠 것에 대비해 사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 사업주의 29.7%가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이나 근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2.0%의 사업주는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4 참조).

한편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각 5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사업주의 34.5%와 응답 근로자의 34.8%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경우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재해 예방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었다. 이는 특히 근로자에게서 높은 응답율을 보여 근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주가 재해예방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표 5 참조).

2000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아는지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질문하였다. 알고 있다는 응답이 근로자보다 사업주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45.0%의 사업주와 50.0%의 근로자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산재보험 적용 사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라면 가입하겠느냐는 질문에 사업주의 36.3%에서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의 필요성 인식이 충분하지 않으며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산재보험 가입방법을 아느냐는 질문에 근로자의 14.0%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정확한 응답을 하였고, 56.0%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표 6

〈표 3〉 치료기간별 산재 치료비 처리방법

	N(%)					
	3일 이하인 경우		4일 이상인 경우		계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산재보험으로 처리	1 (6.7)	0 (0.0)	1 (5.6)	7 (20.0)	2 (4.7)	7 (11.1)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7 (46.7)	12 (42.9)	19 (50.0)	15 (42.6)	26 (60.5)	27 (42.9)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처리	7 (46.7)	7 (25.0)	7 (38.9)	6 (17.1)	14 (32.6)	13 (20.6)
기 타	0 (0.0)	9 (32.1)	1 (5.6)	7 (20.0)	1 (2.3)	16 (25.4)
계	15 (100.0)	28 (100.0)	18 (100.0)	35 (100.0)	43 (100.0)	63 (100.0)

〈표 4〉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준비

	N(%)	
	사업주	근로자
산재에 대한 사업주 준비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	52 (29.7)	
개별적으로 은행저금이나 적금 가입	17 (9.7)	
산재보험 가입	5 (2.9)	
기타	10 (5.7)	
준비하지 않음	91 (52.0)	
계	175 (100.0)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 입		52 (50.0)
미 가 입		52 (50.0)
계		104 (100.0)

〈표 5〉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복수 응답)

	사업주	N(%) ^{†)}
안전보건교육실시	60 (34.5)	32 (34.8)
보호구 지급	44 (25.3)	25 (27.2)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11 (6.3)	14 (15.2)
작업 환경 개선	36 (20.7)	25 (27.2)
기 타	22 (12.6)	1 (1.1)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음	57 (32.8)	41 (44.6)
대상자 수	174 (100.0)	92 (100.0)

주) 백분율(%)은 대상자 수 대비 비율임

참조).

3)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도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도 차이를 3점 척도로 비교하였다.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산재보험이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된다'는 문항에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고의 위험이 적거나 혼자 일해서 산재보험이 불필요하다', '보험료가 비싸 사업주에게 부담이 된다', '혼자 일하므로 가입이 불필요하다'는 문항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견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사업주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면 근로자는 그 보다 적은 점수를 주어 근로자가 더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재를 당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표 7 참조).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실제로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를 분석해 보았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응답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사업주 응답보다 산재보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고, 산재보험의 부정적인 측면에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직원 중에 실제로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사업주는 재해를 당한 경험이 없었던 사업주보다 산재보험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만 실제로 재해를 경험하게 되면 재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업주보다 산재보험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직원 중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사업주와 그렇지 않았던 사업주간의 가장 큰 인식 차이를 나타낸 것은 '혼자서 또는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가입이 불필요하다'에 관한 문항이었다. 직원 중 재해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업주는 이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표 6〉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의견

		사업주	근로자	N(%)
5인미만사업장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인지	안 다 모른다 계	99 (55.0) 81 (45.0) 180 (100.0)	52 (50.0) 52 (50.0) 104 (100.0)	
산재보험 확대적용시 가입 의사(사업주)	가입 한다 가입 안한다 계	114 (63.7) 65 (36.3) 179 (100.0)		
산재보험 가입방법 인지 여부(근로자)	의무적으로 가입 사장이 알아서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 잘 모르겠다 계	14 (14.0) 16 (16.0) 14 (14.0) 56 (56.0) 100 (100.0)		

〈표 7〉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도 비교

		사업주	근로자	t	M(SD)
긍정적 측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감소	2.5 (0.7)	2.4 (0.7)	1.0640	0.2883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도움	2.6 (0.6)	2.7 (0.5)	-1.1507	0.2510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므로 편리	2.5 (0.7)	2.5 (0.7)	-0.3235	0.7466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	2.1 (0.7)	2.1 (0.7)	-0.7503	0.4537
부정적 측면	사고 위험이 적어 산재보험 불필요	2.0 (0.9)	1.8 (0.8)	2.6564	0.0084**
	보험료가 비싸 사업주에게 부담	2.4 (0.6)	2.2 (0.7)	2.7189	0.0070**
	혼자 일하므로 가입 불필요	2.0 (0.9)	1.6 (0.8)	3.2710	0.0012*
	근로자의 근무태만 초래	1.4 (0.7)	1.3 (0.6)	0.6069	0.5444
	사고에 대한 행정처리 복잡	2.5 (0.7)	2.4 (0.7)	1.2475	0.2133

- '그렇다' : 3점, '보통이다' : 2점, '그렇지 않다' : 1점

* p<0.05 ** p<0.01

응답한 반면, 재해를 당했던 경험이 없는 사업주는 보통이라고 응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01$). 즉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규모가 적더라도 산재보험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표 8 참조).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 산재보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실제로 자신이 재해를 당했던 경우에도 재해를 당하지 않았던 근로자보다 산재보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의 응답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를 해 주므로 간편하다'라는 문항이었다($p<0.001$). 이 문항에 대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평균 점수 2.6),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오히려 보통이하(평균 점수 1.6)의 점수

를 주어 서로 다른 인식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내었다(표 9 참조).

4) 산재보험에 대한 요구도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구도를 3점 척도로 비교하였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요구도의 각 항목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평균 2.7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도 사업주는 '보험료 인하', '사고 없을 때 보험료 환급', '재해 보상금의 인상', '보험료 지급이나 보상처리 절차 등의 행정업무 간소화'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근로자는 '재해 보상금의 인상'과 '행정업무 간소화'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한편 '보험료 인하'와 '사고 없을 때 보험료 환급'은 근로자보다 사업주에게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산재 예방사업 강화'는 사업주보다 근로자에게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표 10 참조).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요구도를 현재

〈표 8〉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도

		산재보험 가입여부				재해 경험 여부				M(SD)
		가입	미가입	t	p	경험 유	경험 무	t	p	
긍정적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감소	2.8 (0.7)	2.5 (0.7)	0.9042	0.3672	2.4 (0.9)	2.6 (0.7)	-1.0368	0.3110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도움	2.8 (0.7)	2.6 (0.6)	0.5498	0.5831	2.4 (0.8)	2.7 (0.6)	-1.6347	0.1164	
	측면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편리	2.8 (0.7)	2.5 (0.7)	1.1518	0.2510	2.4 (0.8)	2.5 (0.7)	-0.9656	0.3356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	2.0 (0.5)	2.1 (0.7)	-0.2356	0.8140	2.2 (0.8)	2.0 (0.7)	0.7975	0.4263	
	위협이 적어 불필요	1.6 (0.9)	2.1 (0.8)	-1.3770	0.1703	1.7 (0.9)	2.1 (0.9)	-1.9251	0.0559	
	부정적	보험료가 비싸 부담	2.4 (0.7)	2.4 (0.6)	-0.2432	0.8082	2.1 (0.8)	2.5 (0.6)	-2.7205	0.0389*
측면	혼자 일하므로 불필요	1.5 (0.9)	2.0 (0.9)	-1.4906	0.1379	1.3 (0.6)	2.1 (0.9)	-5.0912	0.0001***	
	근로자의 근무태만 초래	1.3 (0.7)	1.4 (0.7)	-0.4369	0.6627	1.2 (0.5)	1.4 (0.7)	-1.0034	0.3137	
	행정처리 복잡	2.8 (0.7)	2.5 (0.7)	0.9773	0.3298	2.1 (0.8)	2.5 (0.7)	-2.7427	0.0068**	

- '그렇다' : 3점, '보통이다' : 2점, '그렇지 않다' : 1점

* p<0.05 ** p<0.01 *** p<0.001

〈표 9〉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도

		산재보험 가입여부				재해 경험 여부				M(SD)
		가입	미가입	t	p	경험 유	경험 무	t	p	
긍정적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감소	2.1 (0.8)	2.5 (0.7)	-1.6622	0.1002	2.4 (0.7)	2.4 (0.8)	-0.0309	0.9754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도움	2.5 (0.7)	2.8 (0.4)	-1.4394	0.1746	2.7 (0.5)	2.7 (0.5)	0.4105	0.6826	
	측면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편리	1.9 (0.7)	2.6 (0.6)	-3.9033	0.0002***	2.4 (0.8)	2.6 (0.6)	-1.4694	0.1451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	2.1 (0.5)	2.2 (0.7)	-0.6394	0.5243	2.0 (0.7)	2.2 (0.7)	-1.0351	0.3033	
	위협이 적어 불필요	1.3 (0.5)	1.7 (0.8)	-2.4473	0.0231*	1.6 (0.7)	1.9 (0.8)	-1.7117	0.0902	
	부정적	보험료가 비싸 부담	1.8 (0.5)	2.2 (0.7)	-2.3619	0.0201*	2.1 (0.6)	2.3 (0.7)	-0.9194	0.3603
측면	혼자 일하므로 불필요	1.6 (0.7)	1.7 (0.8)	-0.2971	0.7671	1.5 (0.7)	1.7 (0.8)	-1.0268	0.3072	
	근로자의 근무태만 초래	1.3 (0.5)	1.3 (0.6)	0.2772	0.7823	1.1 (0.4)	1.4 (0.7)	-2.4049	0.0181*	
	행정처리 복잡	2.3 (0.6)	2.4 (0.7)	-0.6215	0.5360	2.2 (0.7)	2.5 (0.7)	-2.0840	0.0399*	

- '그렇다' : 3점, '보통이다' : 2점, '그렇지 않다' : 1점

* p<0.05 ** p<0.01 *** p<0.00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실제로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보다 '재해보상금 인상', '산재 예방사업 강화', '행정업무 간소화'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한 직원 중 재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업주는 경험이 없는 사업주보다 '산재 예방사업의 강화'와 '행정업무 간소화'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보험료 인하'와 '재해보상금 인상'에는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표 11 참조).

근로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산재 예방사업 강화'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고,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재해보상금 인상', '행정업무 간소화'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본인이 실제로 재해를 당했던 근로자는 사업주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재 예방사업의 강화'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본인이 실제로 재해를 당한 경험이 없던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료 인하'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표 12 참조).

6. 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사업주도 근로자와 똑같이 생산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이 상존해 있다. 본 결과에서도 1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조사대상의 44.1%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표 10〉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구도 비교

	사업주	근로자	t	M(SD)
보험료 인하	2.9 (0.3)	2.7 (0.6)	2.6413	0.0092**
사고 없을 때 보험료 환급	2.9 (0.4)	2.8 (0.4)	0.9102	0.3635
재해 보상금 인상	2.9 (0.3)	2.9 (0.3)	0.1401	0.8887
산재 예방사업 강화	2.7 (0.5)	2.8 (0.5)	-0.1891	0.8502
보험처리절차 등 행정업무 간소화	2.9 (0.3)	2.9 (0.3)	0.2716	0.7861

- '그렇다' : 3점, '보통이다' : 2점, '그렇지 않다' : 1점

** p<0.01

〈표 11〉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의 요구도

	산재보험 가입 여부				재해발생 경험 여부				M(SD)
	가입	미가입	t	p	경험 유	경험 무	t	p	
보험료 인하	2.9 (0.4)	2.9 (0.3)	-0.0129	0.9897	2.8 (0.4)	2.9 (0.3)	-0.5637	0.5737	
사고 없을 때 보험료 환급	2.9 (0.4)	2.9 (0.4)	0.1047	0.9168	2.9 (0.4)	2.9 (0.4)	-0.2744	0.7841	
재해 보상금 인상	3.0 (0.0)	2.9 (0.3)	1.0076	0.3150	2.8 (0.4)	2.9 (0.3)	-1.0746	0.2944	
산재 예방사업 강화	2.8 (0.5)	2.7 (0.5)	0.0403	0.9676	2.8 (0.5)	2.7 (0.5)	0.4427	0.6586	
행정업무 간소화	3.0 (0.0)	2.9 (0.3)	0.6811	0.4967	3.0 (0.2)	2.9 (0.3)	0.2409	0.8099	

- '그렇다' : 3점, '보통이다' : 2점, '그렇지 않다' : 1점

〈표 12〉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도

	산재보험 가입 여부				재해발생 경험 여부				M(SD)
	가입	미가입	t	p	경험 유	경험 무	t	p	
보험료 인하	2.7 (0.7)	2.7 (0.6)	-0.3329	0.7400	2.7 (0.6)	2.8 (0.5)	-0.6054	0.5463	
사고 없을 때 보험료 환급	2.8 (0.4)	2.8 (0.4)	0.0000	1.0000	2.8 (0.5)	2.8 (0.4)	-0.2288	0.8195	
재해 보상금 인상	2.8 (0.4)	2.9 (0.3)	-0.7031	0.4839	2.9 (0.4)	2.9 (0.3)	0.1888	0.8509	
산재 예방사업 강화	2.8 (0.4)	2.7 (0.5)	0.4560	0.6496	2.9 (0.4)	2.7 (0.5)	1.6189	0.1090	
행정업무 간소화	2.8 (0.4)	2.9 (0.2)	-1.0021	0.3359	2.9 (0.2)	2.9 (0.3)	0.3857	0.7006	

- '그렇다' : 3점, '보통이다' : 2점, '그렇지 않다' : 1점

산재보험에 확대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주인 소규모 기업의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업주가 경험한 것보다 근로자가 더 많은 재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당했던 재해를 근로자가 더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기업보다 소기업에 신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진 근로자들이 더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보다 더 많이 사업장을 이직하고 있기(정혜선, 1995) 때문에 근로자에게서 높은 재해경험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35.3%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산재보험 가입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35.3%의 사업주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재보험의 의무적 가입만을 안내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인 보완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 의하면 직원 중에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나 본인이 직접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게서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재보험의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산재를 경험하고 나니 산재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반복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서 산재보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산재를 경험하고 나니 산재보험에 정말 필요하고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구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산재예방사업의 강화이었다. 이는 특히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산재를 경험한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재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재해예방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산재보험은 보상업무에 치중해 있어 재활사업과 예방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보험요율 산정방식이 기업의 산재예방활동을 유인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최재숙, 2000). 또한 정부의 행정조직 상에서도 보상과 예방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공단 및 업무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산업보건 전문가 집단도 연계된 사업이나 연구를 시행하기 보다는 분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보다 산재발생율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산재예방사업의 강화는 산재보험 재정안정화에도 중요한 문제이므로(노동연구원, 1999), 향후 산재보험에서 예방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역할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구에 기초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재해보험은 전체 사업 가운데 예방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예산배정의 우선권 부여와 함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이처럼 산재보험에서 산재예방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 독일은 재해자수와 사망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윤조덕, 1999).

그동안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율은 대기업보다 높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5인 미만까지 확대되면 당분간은 산재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실태나 건강관리 실태 등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산재율이 증가된다 할지라도 산재감소정책만을 추진하기 보다는 산재의 근원적인 뿌리를 밝혀내기 위하여 산재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왜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조재국 등, 1999), 막연히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해율이 높다는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열악한 작업환경은 재해의 기본적인 원인이나 개선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이경종 등, 1992) 특히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대부분이 임대사업장이기 때문에 작업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원인을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높은 재해율로만 생각하여 숫자상의 재해율 감소만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왜 재해율이 높은지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200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노동부, 2000). 이에 따라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을 정부의 안전보건사업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사 대상 근로자 중 4일 이상의 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만도 33.7%에 이르는 등 신체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근로자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해 있다. 이제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보건관리지원사업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정혜선 등, 1998),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종합적인 보건관리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도 및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산재보험 확대 적용 시행 후 효율적인 산재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간호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0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업주는 181명, 근로자는 105명이었고, 조사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사업장이었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연구대상사업장은 제조업이 78.9%로 제일 많았고, 설립년도는 1990년-2000년 사이인 경우가 68.0%로 제일 많았으며, 공장소유형태는 임대가 93.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인 경우가 44.1%로 제일 많았으며, 산재보험가입은 4.4%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 대상 사업주의 18.2%에서 직원 중 재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 대상 근로자의 60.0%에서 작업 중 본인이 재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해가 발생했던 경우 중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4일 이상의 재해는 사업주의 응답에서는 9.9%, 근로자의 응답에서는 33.3%로 나타났다. 산재 치료비의 처리방법을 보면 사업주, 근로자 모두 회사가 처리했다는 응답이 각각 50.0%, 42.6%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처리했다는 응답도 각각 38.9%, 17.1%로 높게 나타났다.
- 2000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45.0%의 사업주와 50.0%의 근로자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라면 가입하겠느냐는 질문에 사업주의 36.3%에서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 직원이 업무 중에 다칠 것에 대비해 사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 사업주의 29.7%가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이나 근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2.0%의 사업주는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산재보험에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산재보험에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된다'는 문항에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보다 산재보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산재보험의 부정적인 측면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직원 중에 실제로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재해를 당한 경험이 없었던 사업주보다 산재보험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 산재보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실제로 자신이 재해를 당했던 경우에도 재해를 당하지 않았던 근로자보다 산재보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구도를 비교

하였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요구도의 각 항목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평균 2.7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보다 '재해보상금 인상', '산재 예방사업 강화', '행정업무 간소화'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근로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산재 예방사업 강화'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직원 중 재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업주와 본인이 실제로 재해를 당했던 근로자에게서 모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재 예방사업의 강화'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직원 중 재해를 입은 경험이 없는 사업주와 본인이 실제로 재해를 당한 경험이 없던 근로자는 모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료 인하'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실히 느끼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에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산재예방사업의 강화이므로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사업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는 산재감소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다. 재해율과 같은 결과측면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다 근본적으로 탐색해 보는 원인파악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다.

넷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종합관리 제도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인식도 및 요구도를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되는 2000년 7월 1일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산업보건 사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 김진수 (1998).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 나라 산재보험의 과제, 산재보험정책연구, 창간호, 산재보험정책 연구회, 51-71
- 노동부 (19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동부 (2000).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안).
- 박수만 (1999).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조덕 (1999). 산재보험과 노동운동-우리 나라와 독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윤조덕 (2000).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산업복지 측면에서, 한국산업간호협회 창립6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산업간호협회.
- 이경종, 조명화, 박종연, 신동천, 노재훈, 문영한 (1992). 인천지역의 산업보건 문제와 그 해결의 우선순위, 예방의학회지, 25(2), 189-198.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재추방운동연합 (1999).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 정진주 (2000). 산재보험제도, 2000년도 제1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건 관리 간호사교육 교재, 한국산업간호협회.
- 정혜선 (1995). 영세사업장 보건관리지원사업 실시 전후의 산업보건수준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선, 백도명, 김은희, 김지용, 하은희, 전경자, 김선민, 박혜숙, 이복임 (1998).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산업간호학회지, 7(1), 65-82.
- 조재국, 선우덕, 장원기, 백도명, 권순만, 주영수, 고덕기 (1999). 산재의료관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재욱 (2000). 산재보험제도,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1998). 산재보험 요양 및 보상체계의 선진화방안(I).
- 한국노동연구원 (1999). 4인 이하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 한국산업간호협회 (2000a). 제4단계 민간단체 공공근로사업 보고서-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 한국산업간호협회 (2000b). 2000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연찬회 자료집.

- Abstract -

Key concept : Perception, Nee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erception and Need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Industries which have less than 5 Employees

*Yun, Soon-Nyung** · *Jung, Hye-Sun***

*Lee, Bok-Im*** · Lee, Hyun-Joo*****

*Lee, Hyun-Jeong***** · Kim, Hwa-Joo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cquire data in order to institute an effectiv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IACI) system. The subjects were employers and employees in small scale industries which have less than 5 employees.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questions on perception and need for IACI. A total of cases were 181 employers and 105 employees participated in the study. Perception and need of employers and employees were assessed using the ANOVA, t-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Workplaces examined mostly in manufacturing(78.9%), industries with one employee(44.1%). Beneficiary rate of IACI was only 4.4%.
2. 60.0% of employees had experienced an industrial accident and in most cases employers paid the cost of medical treatment. 45.0% of employers and 50.0% of employees were not aware that IACI had been put into effect starting July, 1, 2000. 52.0% of employers had no typ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3. The need of outcome measures, especially of employers and employees who had an IACI, were higher than those without an IACI. Employers and employees who had experienced an industrial accident outnumbered those who hadn't.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re is a great need for the institution of an IACI and a health promotion policy in small scale industries.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Instru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Korea Labor Institute

**** Instructor, Yong-in Songdam College

***** MPH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